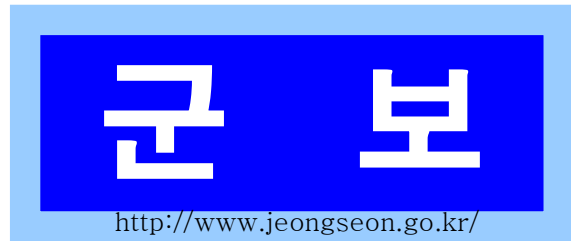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21호 2017. 06. 29. (목)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58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581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조례 제2582호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정선군조례 제2583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정선군조례 제2584호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4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28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7
- 정선군규칙 제128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4
- 정선군규칙 제1284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일부개정조례 35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7-93호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52
- 정선군고시 제2017-95호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고시 56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7-664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60

조 례

제238회 정선군의회(2017. 6.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8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5명” 을 “59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4명” 을 “586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97	597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72	572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24	10	2	2	1	9
6급 이하 계	543	543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3			3		
지도사	17	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95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597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584명</u>	1. ----- <u>586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지역공동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 증원
-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 인력 증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595명→597명 (증 2명)
 - . 집행기관의 총수 : 584명→586명 (증 2명)
 -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4급·5급 : 본청(2), 직속기관(1) : 변동없음
 - 5급 : 본청(10), 의회(2), 직속기관(2), 사업소(1), 읍면(9)
 - . (본청 감 1명, 직속기관 증 1명)
 - 6급이하 : (541) ⇒ (543) (증 2명)

제238회 정선군의회(2017. 6.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81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공동체 총괄 업무

제20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 농지관리
4.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
5.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6.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7. 양곡관리
8.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9.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10.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2.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14.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
15.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

제2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단 등)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 각 호의 실·과를 둔다.	제3조(실·과·단 등) ①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농업축산과</u>	<삭 제>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축산과) <u>농업축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	<삭 제>
1. <u>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u>	
2. <u>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u>	
3. <u>농지관리</u>	
4. <u>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u>	
5. <u>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u>	
6. <u>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 관리</u>	
7. <u>양곡관리</u>	
8. <u>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u>	

9. <u>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 금의 지원</u> 10. <u>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 통지원에 관한 사항</u> 11. <u>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 원</u> 12. <u>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u> 13. <u>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 가 육성 업무</u> 14. <u>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 술 지도</u> 15. <u>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u> 16. <u>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u>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 한다. 1. ~ 14. (생 략) <신 설> 15. (생 략) 제20조(소관사무) 센터 소장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 설>	제13조(지역경제과)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지역공동체 총괄 업무</u>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제20조(소관사무) ----- -----. 1. <u>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 진</u>
---	--

<u>1. · 2.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3. · 4.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5. · 6.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7. · 8.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9. · 10.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16. · 17. (현행 제1호 및 제2 호와 같음)</u> <u>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u> <u>3. 농지관리</u> <u>18. · 19. (현행 제3호 및 제4 호와 같음)</u> <u>4.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 · 지도 · 관리</u> <u>5. 농촌관광 · 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u> <u>20. · 21. (현행 제5호 및 제6 호와 같음)</u> <u>6.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 관리</u> <u>7. 양곡관리</u> <u>22. · 23. (현행 제7호 및 제8 호와 같음)</u> <u>8. 농 · 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u> <u>9.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u> <u>24. · 25. (현행 제9호 및 제10 호와 같음)</u> <u>10.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u> <u>1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u>
--	---

<u>11. · 12.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13.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제27조(설치) 제2조에 따라 설치 하는 읍·면사무소의 명칭·위 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 례로 정한다.	<u>원</u> <u>26. · 27. (현행 제11호 및 제 12호와 같음)</u> <u>12.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13.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 가 육성 업무</u> <u>28. (현행 제13호와 같음)</u> <u>14.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 술 지도</u> <u>15.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u> 제27조(설치) ----- <u>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u> ----- -.
--	--

개 정 이 유

- 지역공동체 및 복지허브화 추진 등 정부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축산과 통·폐합 등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본청에 두는 실·과·단을 규정함(안 제3조)
 - 본청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폐합 설치
- 농업축산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안 제11조)
 - 농업축산과 분장사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
-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안 제13조)
 - 지역공동체 총괄 업무 분장
-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농업축산과 분장사무 흡수(안 제20조)
-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안 제27조)

제238회 정선군의회(2017. 6.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82호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사무소의명칭 중 “정선읍사무소”를 “정선읍 행정복지센터”로, “사북읍사무소”를 “사북읍 행정복지센터”로, “화암면사무소”를 “ 화암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행정자치부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팀 권역형 시행 읍면인 정선읍, 사북읍, 화암면사무소의 명칭 변경 추진

주 요 내 용

- 정선읍·사북읍·화암면사무소 명칭을 각각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화암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안 별표)

제238회 정선군의회(2017. 6.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83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기금업무 담당과장”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u>주민생활지원과장</u> 2. (생략) ② (생략)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1. ----- <u>기금업무 담당과장</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2015년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과되어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서 각각 업무가 분장되었음에도 기금조례상으로 기금운용관리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무와 조례간 괴리가 발생하여 이를 없애고, 사회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업무에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금운용관 명칭 재정립(안 제7조)
-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 기금업무 담당과장

제238회 정선군의회(2017. 6.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84호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정선군 농작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과 부단장 각 1명, 반장 2명 및 각 반원 6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단장: 부군수
2. 부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3. 반장
 - 가. 병해충예찰반: 기술연구과장
 - 나. 병해충기술지원반: 작물지도팀장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계획의 수립·시행
2. 추진 및 지도·점검
3. 군 및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4. 예산·기술 지원
5. 농업인교육 실시
6. 기술연구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업무 등 수행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 및 관련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업무 경력자로 하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외래·돌발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 등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안 제3조)
-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식물방제관,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규 칙

2017년도 제5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8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축산과 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별표)
 - 총 595명 ⇒ 총 597명 (증 2명)

○ 조정내역

- 분야별: 지역공동체 전담 인력보강 (증 1명),
읍면 복지허브화 전담 인력보강 (증 1명)
- 부서별: 지역경제과 (증 1명) ⇒ 지역공동체담당 신설,
정선읍 (증 1명) ⇒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정선군지방공무원직렬별정원표(제2조관련)

[illegible]

		환 경	1	1					
		사회복지	0						
		행정 · 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10	5				4	1
		행정 · 농업	5			1			4
일 반 직 	6급	행정 · 녹지	1	1					
		행정 · 전산	2	1				1	
		행정 · 공업	2	2					
		행정 · 보건	1			1			
		보건 · 식품위생 · 간호 · 의료기술	1			1			
		행정 · 환경	2	2					
		행정 · 시설	5	4				1	
		농업 · 수의	1			1			
		농업 · 시설	1			1			
		농업 · 시설 · 녹지						3	
		시설 · 공업	1				1		
		공업 · 농촌지도사	1			1			
		농업 · 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녹지						1	
		행정·농업·사회복지	2					1	1
		행정 · 환경 · 공업	1				1		
		행정 · 환경 · 보건	1				1		
		행정 · 농업 · 시설 · 녹지	5						5
		방송통신 · 전산	1	1					
		보건 · 간호 · 의기	6			6			
		보건진료	3			3			
		운전 ·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 · 시설관리	2	1			1		
일	7급	소 계	17 6	90	1	29	7	23	26
		행 정	57	35	1			8	13
		세 무	8	7					1
		사회복지	9	4				3	2
		전 산	1	1					

반

일

일

2017년도 제5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8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지방농촌지도관”을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술지원과”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축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제6조제2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술지원과장: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3. 기술연구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제8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9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직급) 본청 실장·과장·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1. ~ 5. (생략) 6. <u>농업축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u> 7. (생략)	제3조(직급)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제5조(직급) 정선군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u>지방농촌지도관</u> 으로 보한다.	제5조(직급) ----- ----- <u>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u> --.
제6조(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기술지원과</u> 및 <u>기술연구과</u> 를 둔다. ② 센터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u>기술지원과장·기술연구과장: 지방농촌지도관</u> <신설> <신설>	제6조(하부조직) ① ----- ----- ----- <u>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u> -----. ② -----. 1. <u>농업축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u> 2. <u>기술지원과장: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u> 3. <u>기술연구과장: 지방농촌지도관</u>
제8조(직급) ① (생략)	제8조(직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생 략)

제9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직급) 수질환경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분장사무) ----- 「지역보건법」 제11조-----
---.

제10조(직급) -----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개 정 이 유

- 지역공동체 및 복지허브화 추진 등 정부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축산과 통·폐합 등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조정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본청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폐합 설치에 따른 본청 농업축산과장 직급 삭제 (안 제3조)
-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조정 (안 제5조)
-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 농업축산과 통·폐합 설치 및 농업기술센터과장 직급 조정 (안 제6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정비 (안 제8조, 제9조)
- 수질환경사업소 소장의 직급 조정 (안 제10조)
- 본청, 직속기관, 읍·면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2]

농업기술센터업무분장표(제7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농업축산과	1	농업·농촌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농정시책개발 및 통합조정
	3	농촌활력증진 및 농업인 복지향상통합 조정
	4	정부양곡 수급관리
	5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관리
	6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관리
	7	농촌현장 포럼운영
	8	농업경영컨설팅지원
	9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10	양곡 가공업자 지도관리
	11	향토산업 및 식품전략 육성사업
	12	귀농·귀촌지원 사업
	13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14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운용
	16	농어촌진흥기금관리
	17	발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18	경지정리사업
	19	한해대책
	20	수리시설 관리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22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오지개발, 농로)
	23	농업용 지하수 관리
	24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5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26	농지전용 허가(협의)
	27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28	농업진흥지역 및 불법농지 관리
	29	개간지 허가

	30	농지정보화
	31	처분농지관리
	32	한계농지 및 영농조건 불리지역 관리
	33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34	농특산물 직거래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35	농특산물 상표,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관한 사항
	36	저온저장고시설사업,농산물집하장의설치및 사후관리
	37	농산물 수출정책에 관한 사항
	38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및 안정성 조사
	39	농산물가공업체 지원·사후관리 지도
	40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산물계약재배사업의 시행
	41	농업인 정보화교육
	42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43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4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45	농산물 선별장 지원사업
	46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7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48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49	재해피해 농가 농경지 및 시설물 조사·복구
	50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51	친환경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52	친환경농자재지원,친환경농산물직거래
	53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유통지원(포장재 지원)에 관한 사항
	54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면세유 지원에 관한 사항
	55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약제 지원에 관한 사항
	56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57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관리
	58	소형농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9	종자업, 비료생산업, 농약판매업에 관한 사항
	60	야생동물 약제지원사업
	61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62	고령지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사업
	63	전업농 육성, 관리

	64	지역특화 소득원개발사업
	65	특산작물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6	과수, 원예분야 생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7	농산물 가공상품화 사업
	68	식량작물 재배, 생산지원
	6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70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1	축산업 등록에 관한 사항
	72	축산경영 안전 추진
	73	내수면 자원보호 관리
	74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 관리
	75	토종 그밖의 가축 육성
	76	축산물 유통관리
	77	초지관리에 관한 사항
	78	축산물작업장 지도감독
	79	부정 축산물 단속
	80	친환경 축산 직접 지불제
	81	축산자금 융자 사후관리
	82	가축방역사업
	83	축산시책 및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84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85	축산분뇨 처리사업
	86	학교급식 지원사업
	87	축산재해 안전관리
	88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89	축산물판매업소인허가관리
	90	가축전염병예방및예찰
	91	공수의 위축관리
	92	동물병원·수의 약사 지도 감독
	93	동물약품 판매허가
	94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사항
	95	친환경학교급식
	96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 관리
	97	관용차량·청사·재물 등의 재산관리

기술지원과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조정
	2	농촌지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	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농업정보화 업무
	6	농촌지도자회 육성·지도
	7	오가피가공교육장 및 향토육성산업 시설 관리
	8	4-H 회 육성·지도
	9	농민회 사업 지원 및 관리
	10	생활개선회 육성·지도
	11	강소농 육성 지원
	12	도시농업 육성 및 지도
	13	농업인 전문교육
	14	농촌생활환경 개선
	15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도
	17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도
	18	농업인 실용교육(명칭변경)
	19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지도
	20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1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
	22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3	농업인 대학 운영
	24	귀농·귀촌 교육 및 지도
	25	농업발전 연구포럼 운영
	26	농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7	농업인 회관 운영·관리
	28	농업인경영상담실, 농업도서실 운영관리
	29	농산물 소득 조사 및 분석
	30	농가경영컨설팅
	31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
	32	농업기계 훈련 및 순회기술교육지원
	33	농업기계 영농지원단 운영
	34	임대 농업기계 유지·관리

	35	농업기계 영농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연구과	1	정부 및 도 보급종 종자 보급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도
	3	전작물 기술 지도
	4	농약안전사용 지도
	5	농업기상 재해관리 지도
	6	친환경농업 육성 · 지도
	7	축산기술 연구·지도
	8	특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9	산채류 및 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0	과수재배 기술지도
	11	과수연구사업
	12	과수시범포·소과류 시범포 운영
	13	민등산 역사증식 및 보존사업
	14	기후 온난화 대응작목 연구
	15	화훼재배 기술지도
	16	시설원예 기술지도
	17	수출농업 기술지도
	18	양채류재배 기술지도
	19	일반채소재배 기술지도
	20	유용곤충 산업화(추가)
	21	향토음식및식품개발 연구
	22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기술지도
	23	특화작목 품질향상 연구
	24	식량작물 생산기술 연구
	25	원예작물 생산기술 연구
	26	특용작물 재배기술 연구
	27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
	28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처방
	29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지도
	30	지역적응 품질 선발 연구
	31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추진
	32	농업인 애로기술 지도
	33	지역특화품목 육성

	34	지역농업특성화
	35	신소득작물 개발보급 및 특산품화
	36	유전자원 증식기술 개발
	37	전통발효 기술연구
	38	향토산업 육성
	39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40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41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
	42	농특산물 가공품 연구 및 상품화 지원
	43	농특산물 저장기술 연구
	44	가공상품 디자인 개발
	45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가축사양관리 지도
	46	친환경미생물 발효축진제조 시설운영
	47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48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49	식품가공실 및 성분분석실 운영
	50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51	국가 병해충 관리
	52	6차 산업육성 및 지도
	53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 및 가공상품화
	54	과학영농체험교육시설운영
	55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
	5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2017년도 제5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84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생략)	제14조(보조금의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제3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회사명		전화 (팩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면적(m ²)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				
구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재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m ²)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m ²)		
보조금 신청액(천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제4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입주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 문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사업기간	본사: 년 월(. .), 공장: 년 월(. .), 연구소: 년 월(.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 금액(임대료)	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		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 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제5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공장 : 년 월(. .), 연구소 : 년 월(. .)			
이전부분의 이전 전(前) 소재지			이전부분의 이전 후(後)소재지	
총 분양 (매입)금액(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유치시 상시 고용인원 신규 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제6조, 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팩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대료 : 천원(원/m ²)
	임대면적 : m ²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별지 제5호서식]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제7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본사소재지	전화	E-mail		
입주유형	☐ 분양 ☐ 매입	입지유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자유형 (이전 또는 신·증 설부분)	☐ 이 전 ☐ 신 설 ☐ 증 설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사업기간	본사: 년 월(월(.)), 공장: 년 월(. .), 연구소: 년 월(월(. .))				
이전 또는 신·증 설(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 설(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매입)금액(원/㎡)	천원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이전 또는 신·증 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 설 후(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 투자금액(부 지+ 설비)	천원	이전(신·증설)전 용인원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 B+ C)	천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C)	천원
보조금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제8조, 제14조 관련)

신 청 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AX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		☐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		투자금액	원		
		부지면적	m ²	건물면적	m ²
		고용인원	명	기존(이전)	명
				신규채용	명
착공일				준 공 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		☐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		연도별	지출비용	보조금 신청액	지원비율
		합 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제9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투자 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m ²)		원	
분양(매입)면적(m ²)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착공(예정)일		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 설비)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 b+ c)		천원					
건축비(㉠)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부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별지 제10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신 청 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투자 내용	신 고 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설립일		등 록 일		
주생산물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부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신청인	기업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최초 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명	신규고용인원	명	
	신청시 인원	명	이전 후 인원	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12호서식]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1. 기업개요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기업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지원대상자		지분 참여비율(%)		
입주 유형		☐ 분양(매입) ☐ 임대	입지 유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귀 유형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2. 국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 (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국내법인의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지분변동사유	☐ 양도 ☐ 증자 ☐ 감자 ☐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국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계획	연도*	년	년
	생산량		

*보조금 신청연도 기재(예: ' 16. 6월 보조금 신청시 ' 16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공장 : 년 월 (. .), 연구소 : 년 월(.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 설비)		원		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건축비(A)	원	시설장비 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 (C)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부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폐광지역 투자기업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차차액보전금 신청서

(제11조, 제14조 관련)

신 청 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전화, FAX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 면적	공장가동 개 시 일

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

구 분	용 자 내 역			이차보전 지원신청액
	용자기관	용자일시	용 자 액	
시설자금				
운전자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차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제12조, 제14조 관련)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도내 신규고용 인원 (명)	기존 고용인원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개 정 이 유

-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이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 구체화(안 제14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 명문화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제8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 서식 미비사항 수정·보완(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7-93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된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정 선 군 수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사안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생발전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라 칭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3조(구성) 본 협의회는 강원남부 지역에 위치한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위원은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본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둔다.

제6조(임기) ①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초대 협의회장은 추대로 하며, 이후 협의회장은 시·군행정 직제 순서에 의거 순임(順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처리사무)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상호 연관된 지역 현안사항의 공동해결 협력
2.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공동 발굴
3. 관광·문화·스포츠·축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
4. 사회단체 및 공직자 교류 활성화

5. 상시 정보교환 및 지역 간 우호증진 협력
6. 이 밖에 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제8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는 협의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안건이 있는 위원은 서면으로 협의회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회장은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협의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본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결과를 본 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① 본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 상생발전 방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계) ① 본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② 본 협의회 경리사항은 정기회의 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보칙)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협약 체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고시 제2017-95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된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정 선 군 수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효율적인 해결을 통한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라 칭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3조(구성) 본 협의회는 폐광지역에 위치한 4개 지방자치단체(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본 협의회 위원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의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자치행정(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행정(행정,시정)담당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본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장이 속한 자치단체 내에 둔다.

제6조(임기) ①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초대 협의회장은 추대로 선임하며, 이 후 협의회장은 시·군 행정 직제 순서에 의거 순임(順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무처리)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폐광지역 광역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2. “폐특법” 및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확보의 공동 노력
3. 가행탄광의 안정적 조업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4. 기타 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제8조(회의) ① 정기회는 년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는 협의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협의안건이 있는 위원은 서면으로 협의회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회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④ 협의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⑤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⑥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의2(실무위원회) ① 본 협의회는 안건 사전 협의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사무 담당과장과 제7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장은 간사로 한다.
-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는 본 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본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개진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부담) ① 본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 상생발전방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회계) ① 본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② 본 협의회 경리사항은 정기회의 시 간사가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 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보칙)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협약 체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7-664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9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면사무소소재지) 일원
3.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도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화암면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17. 6. 29. ~ 2017. 7. 14.)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화암면사무소로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